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“3억원”을 “5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보증,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은 각각 5억원”을 “보증은 10억원”으로 한다.

제2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행위를 위한 조합에 조합원으로”를 “행위에”로, ““조합”을 ““재건축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“조합”을 “재건축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신용보증의 한도) ① (생략)	제28조(신용보증의 한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: 보증 종류별 각 <u>3억원</u> . 다만, 제3조제4호에 따른 <u>보증,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은 각각 5억원으로 한다.</u>	1. ----- ----- <u>5억원</u> . ----- ----- <u>보증은 10억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2. 3. (생략)	2. 3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28조의2(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) ① (생략)	제28조의2(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
2.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제1항의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담보주택(이하 “담보주택”이라 한다)의 소유권이전등기(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. 다만,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에 조합원으로 참가하거나 「주택법」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및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에 동의(이하 이 항에서 “조합 등에 참가”라 한다)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로서 제1항의 배우자가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는

2.

.

행위에

“재건축

제외한다.	-----.
가.·나. (생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3.·4. (생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5.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(신탁 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 금보증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을 받은 사람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. 다만,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<u>조합</u> 등에 참가함으로써 담보주택 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.	5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재건</u> <u>축</u> ----- ----- -----.
6.·7. (생략)	6.·7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